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926호 2013. 3. 5(화)

◀ 고 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변경)(제2013-29호) 2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제2013-33호) 5

◀ 공 고 ▶

-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3-378호) 7
-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3-379호) ... 11
-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3-382호) 16
- 제1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포항시의회 공고 제4호) 21

◀ 기 타 ▶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2

회 람								
--------	--	--	--	--	--	--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3-29호

고 시 문

포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

포 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원
 - 종 류 : 포항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3류 457호선)
 - 명 칭 : 송도동 도시계획도로(소3-457) 개설공사
 - 2. 사업의 규모 : 도로 개설 L=180m., B=6m
 -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 ~ 2012. 12. 31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 ~ 2015. 12. 31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성 명 : 포항시장
 -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 ※ 관계도서 등은 포항시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로과(☎054-270-3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편 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비 고
	시 구	동 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포항 남	송도	311-325	전	55	55		국(재무부)			
2	"	"	311-324	전	11	11		국(재무부)			
3	"	"	311-316	대	11	11		국(재무부)			
4	"	"	311-318	임	142	142		국(재무부)			
5	"	"	311-315	전	1	1		국(재무부)			
6	"	"	311-321	전	104	104		국(재무부)			
7	"	"	311-320	전	7	7		국(재무부)			
8	"	"	311-214	대	66	3		이태술			
9	"	"	311-162	대	86	28		이차항			
10	"	"	378-76	대	126	82		이차항			
11	"	"	378-226	전	99	13		남필련			
12	"	"	311-300	대	129	64		남필련			
13	"	"	311-301	대	67	33		김태열			
14	"	"	311-8	대	26,798	33		국(기상청)			
15	"	"	311-302	대	57	1		조연수			
16	"	"	산24-41	임	1,027	46		국(교육 과학기술부)			
17	"	"	산24-38	학	14,562	258		경상북도 교육감			
18	"	"	278-252	대	212	35		경상북도 교육감			
합 계					43,560	927					

수용 또는 사용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구조	용도	단위	편입 수량	비고
	구	동	지번					
1	남구	송도	311-276	항석	가옥	m2	48.60	
				경량철골	철문	EA	1.00	
2	남구	송도	311-167	경량철골	비닐하우스	m2	136.00	
				경량철골	비닐하우스	m2	38.30	
				판넬	담장	m2	29.97	
3	남구	송도	311-162	판넬	담장	m2	28.80	
				블록	화단	m2	29.50	
				판넬	창고	m2	9.80	
				수도	조경수	EA	2.00	
				수목	감나무	주	2.00	
				수목		주	24.00	
				경량철골	대문	EA	1.00	
				콘크리트	마당	m2	36.80	
4	남구	송도	378-226	슬레이트	가옥	m2	83.70	
				블록	담장	m2	8.00	
				토사	화단	m2	5.70	
				콘크리트	마당	m2	29.60	
5	남구	송도	311-300	슬레이트	가옥	m2	48.00	
6	남구	송도	311-301	슬레이트	가옥	m2	25.80	
				콘크리트	마당	m2	18.84	
7	남구	송도	311-302	블록	담장	m2	4.32	
				블록	장독대	m2	1.80	
8	남구	송도	311-8	블록	담장	m2	23.76	
9	남구	송도	산24-38학	슬래브	가옥	m2	65.40	
				슬레이트	현관	m2	4.40	
				콘크리트	마당	m2	31.80	
				수도		EA	1.00	
				알루미늄	대문	EA	1.00	
10	남구	송도	산24-38학	슬레이트	가옥	m2	82.80	
				판넬	가옥	m2	60.30	
				블록	담장	m2	68.47	
				콘크리트	마당	m2	20.40	
				블록	장독대	m2	1.40	
				수목	소나무	주	2.00	
				수목	소나무	주	5.00	
				수목	소나무	주	2.00	
				수목	소나무	주	2.00	
11	남구	송도	378-335	슬레이트	가옥	m2	72.90	
				슬래브	가옥	m2	14.70	
				블록	담장	m2	1.60	

포항시 고시 제2013 - 33 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

포 항 시 장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47-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도로)사업
 - 명 칭 : 포항세명기독병원신축공사 및 중로2류100호선 개설사업
 - 3. 면적 또는 규모
 - 의료시설 : 75,587㎡(건축면적:13,043.92㎡, 건축연면적:72,632.69㎡)
 - 도 로 : 연장 67m, 폭 12m, 면적 1,47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비전21 대표이사 류인혁
 -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6번지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의료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
				대장	편입	성 명	주 소	
1	우현동	산47-1	임	31,712	31,712	(주)비전21	포항시 남구 대도동100-1	대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2	우현동	산48-2	임	22,356	22,356	(주)비전21	포항시 남구 대도동100-1	“
3	우현동	251	과	21,508	21,508	(주)비전21	포항시 남구 대도동100-1	“
4	우현동	253-2	전	367	11	(주)비전21	포항시 남구 대도동100-1	“
계		4 필지		75,943	75,587			

◦ 도시계획도로(중로2류10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
				대장	편입	성 명	주 소	
1	우현동	산47-5	임	2,999	113	(주)비전21	포항시 남구 대도동100-1	대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2	우현동	산48-3	도	12,688	511		국(건설부)	
3	우현동	산48-4	임	875	622	(주)비전21	포항시 남구 대도동100-1	대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4	우현동	산48-5	도	57	57		국(건설부)	
5	우현동	466	구	7,354	86		국(농림부)	
6	우현동	236-1	도	4,439	81		국(건설부)	
계		6 필지		28,412	1,470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3 - 378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개정(2013. 1. 9)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

(단위 : 원)

구 분	숙박비(1야당)		비 고
	당 초	변 경	
제1호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실 비	
제2호	40,000	실 비 (상한액 : 특별시및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3. 개정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8 ~ 2013. 3. 20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4, FAX 270-2080)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의 제1호 숙박비 46,000(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을 실비로 하며, 별표 1의 제2호 숙박비 40,000을 실비(상한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관련) (단위:원)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u>46,000</u>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u>실비</u>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u>40,000</u>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u>실비</u> (상한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비고 : 1~4(생 략)						비고 : 1~4(현행과 같음)					

포항시 공고 제2013 - 379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강화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통보 : 2012. 12. 3.

2. 주요내용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
 - 현재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
 - **【추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공금유용도 횡령에 해당하므로 금액기준 동일하게 적용

3. 개정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8 ~ 2013. 3. 20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4, FAX 270-2080)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업무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생략)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현행과 같음)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p>※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고,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p> <p><신 설></p>					<p>※비고 : (현행과 같음)</p> <p>※비고 : <u>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u></p>				

포항시 공고 제2013 - 382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4302호, '13. 1. 9. 공포)에 따라 일부 수당의 변경된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 서울사무소 근무 수당을 파견수당과 구분하고, 서울사무소 외에 다른 원격지 근무자에게도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
 -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지급금액 : 월 250,000원
-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포항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월 3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3. 개정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8 ~ 2013. 3. 20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4, FAX 270-2080)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당 지급에 관하여”를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9의 제7호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포항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 (소재지가 포항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0,000원

[별표 3] (생 략)

[별표 4] (현행과 같음)

포항시의회 공고 제4호

제 1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포항시의회 의원 이준영 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3년 3월 8일(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3년 2월 26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철 구

기 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3년 2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 2. 22.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2월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광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악성	학야 (수자원공사)	
			안개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안개염수	북류수	진전지	늘대지수	곡강천 북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변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물질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22	불검출	0.17	0.22	0.22	불검출	0.15	0.22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3.2	1.2	1.3	3.3	3.5	0.5	1.7	1.7	1.2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6	0.02	0.03	0.06	0.06	0.01	0.03	0.08	0.03	
	건강상유해영양물질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득제염소 독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92	0.93	0.74	0.46	0.50	0.31	0.44	0.63	0.85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39	0.044	0.036	0.032	0.019	0.016	0.039	0.006	0.032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19	0.036	0.032	0.010	0.006	0.009	0.021	0.002	0.027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4	0.008	0.004	0.013	0.008	0.005	0.013	0.002	0.005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6	불검출	불검출	0.009	0.005	0.002	0.005	0.002	불검출	

구 번	검사항목	경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지원공사) 신용기계 일부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댐수	북류수	진전지	눌태지수	곡강천 북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22	59	82	121	124	48	75	124	70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3.3	2.6	3.0	2.7	2.2	1.9	2.3	2.5	5.4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7.4	7.5	7.2	7.4	7.4	7.3	7.1	7.1	7.5	
45.아연(Zn)	3mg/ℓ이하	0.010	0.004	0.002	0.003	0.003	0.012	0.007	0.208	0.002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36	11	10	38	37	11	26	18	11	
47.중발잔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226	107	138	240	236	99	185	231	138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11	0.09	0.07	0.10	0.10	0.08	0.10	0.08	0.06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65	13	16	70	68	12	38	88	16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4	
판 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사항목	경수장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흥동	해동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52	1.06	0.65	0.49	0.56	0.43	0.59	0.50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29	0.011	0.003	0.012	0.013	0.016	0.009	0.203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37	11	10	37	37	11	26	18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270-8282,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